

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

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8671
 원 고 흥 봉 유
 피 고 전민준 외 3명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원고에 관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합니다.



정정 후 당사자 표시

18700

흥 봉 유(270521-2005710)

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53, 105동 201호

송달장소: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8, 4층 (서초동, 우림빌딩)

원고의 법정대리인(한정후견인)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

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92, 3층(봉천동, 태광빌딩)

대표자 이사 장혜경

송달장소: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18, 4층(서초동, 우림빌딩)

신청이유

2018. 12. 21. 원고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6년단50285호로 구속경을 한정후견인으로 하는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었으며, 이후 2019. 9. 27.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[114322-0000225,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92, 3층(봉천동, 태광빌딩) 대표자 이사 장혜경]으로 한정후견인이 변경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위와 같이 원고의 표시를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서류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후견등기사항증명서 | 1부 |
| 1. 2019년단2513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심판문 | 1부 |

2019. 9. 30.

위 원고의 법정대리인
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
 대표자 이사 장혜경



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귀중